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961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7,815,720원을 지급하라.
나. 2024. 10. 18.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8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성호

별지